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78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최호정,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박춘선, 신복자,
오금란, 유만희, 유정희,
이병윤,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규호,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가사·돌봄노동은 사회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력단절은 경제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는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력보유시민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조례는 가사·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권리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를 통해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력보유시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성평등 사회 실현 및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력보유시민과 가사·돌봄노동의 의미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라.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증진함으로써 성평등 사회 실현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시민”이란 일 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사·돌봄노동”이란 다음 각 목의 노동을 말한다.
 - 가. 가정 내에서 가정의 유지와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위해 수행하는 청소, 세탁, 식사준비, 가족의 정서·생활 관리 등 무급의 가사노동
 - 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의존이 필요한 구성원을 보호·보살피는 돌봄노동(무급·비공식 형태의 노동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

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의 재생산을 지탱하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정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경력인정서에 따른 경력인정 결과가 공공기관 및 시·산하기관 인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4.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가치를 반영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리증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권리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력인정 기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도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노동·복지 전문가, 기업 대표, 경력보유시민 대표 등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 · 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 · 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 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3조(시장의 책무)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¹⁾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기시행 계획 활용]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제5조(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	[재정소요 영향 미미] 경력인증서 발급형태에 따라 달라지나, PDF형태로 발급자 본인이 인쇄하는 형태를 가정할 경우 별도의 재정소요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4	제6조(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지원사업)	제1항	△ [지원사업 관련 비용발생] 경력보유시민 대상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현재 일부 기추진 ²⁾ 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책적 ³⁾ 으로 정해진 바 없어 구체적 추계가 곤란함
		제2항	△ [인센티브 관련 비용 발생] 경력보유시민 대상 인센티브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해당 인이 규정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운영방식 ⁴⁾ 에 따라 소요비용이 상이하여 통상적 사례를 통한 자체추계도 곤란함
5	제7조(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리증진위원회 설치)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위원회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비용을 자체 추계함 ⇒ 총 57,249천원 소요예상(연평균 11,450천원 소요)
6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통상 비용 수반요인 ⁵⁾ 이 없거나 있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 2) **[기추진사업]** 서울시 여성가족실 2025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 : 4,237,657천원 등
- 3) **[정책적 결정 필요]** 확대되는 사업 특성상 다양한 지출결정요인(정책맥락, 市예산한정성,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기관의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검토·추진된 바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곤란함
- 4) **[인센티브 추진방향 설정 필요]** 서울시의회 주최 가정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2025. 3. 7.)의 토론집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가사수당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나 해당사안에 대해 다양한 쟁점과 우려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보다 다각도의 논의를 통한 추진방향 설정이 전제될 경우 비로소 소요비용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5)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경력보유시민 권리증진위원회 운영비(안 제7조)

나. 전제

- (위 원 회)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서울시 통상적 위원회 운영비용을 활용하여 임의가정
 - (위원구성) 위원구성은 15인을 가정⁶⁾(공무원 3인 + 민간위원 12명)
 - (위원임기) 서울시 통상적인 위원회 위원 임기를 고려하여 2년 전제
 - (회의개최) 분기별 1회씩 연 4회⁷⁾ 실시 가정
 - (소요항목) 참석수당 1인 200,000원, 업무추진경비 1인 30,000원, 위촉장 제작비 1인 5,500원 전제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 고려)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자체추계) 서울시 통상적 위원회 운영비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57,249천원(연평균 11,450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위원회 운영 비용(안 제7조)	11,483	11,400	11,483	11,400	11,483	57,249
	소계(a)	11,483	11,400	11,483	11,400	11,483	57,249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1,483	11,400	11,483	11,400	11,483	57,249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행적 입법⁸⁾이므로 구체적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 위원회 운영비용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하였음

6) [통상적 서울시 위원회 고려] 안 제8조에 규정된 위원회 최대구성인 15인을 고려하고, 경력보유시민의 권리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포함 공무원 신분 위원 3인 및 경력보유시민의 권리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 민간위원 12명을 임의가정

7) [서울시 위원회 관련 조례 고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가정

8)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민간위원 수, 위원구성, 회의개최 주기 등 (다양한 지출결정요인)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경력보유시민 권리증진위원회 운영비(안 제7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57,249천원(연평균 11,450천원⁹⁾ × 5년)

나. 연평균 소요비용 = 11,45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위원회 운영비용		11,483	11,400	11,483	11,400	11,483	57,249

① 참석수당 비용 = 9,600천원

$$= \text{수당단가}(P) \times \text{지급인원}(Q) \times \text{연4회}(T)$$

$$= 200\text{천원}^{10)} \times 12\text{명}^{11)} \times 4\text{회}$$

② 업무추진경비 = 1,800천원

$$= \text{경비단가}(P) \times \text{지급인원}(Q) \times \text{연4회}(T)$$

$$= 30\text{천원}^{12)} \times 15\text{명} \times 4\text{회}$$

③ 위촉장 제작비 ≈ 83천원¹³⁾

$$= \text{제작비용}(P) \times \text{인원}(Q)$$

$$= 5,500\text{원}^{14)} \times 15\text{명}$$

9) 11,449.8천원이나 절상하여 11,450천원으로 기재함

10)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1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제2항에 따라 공무원(당연직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12명에게 지급

1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최근 50천원으로 변경(2024. 8. 27.개정)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

13) 82,500원이나 절상하여 83천원으로 작성(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

14) 통상적인 서울시 위촉장 제작비용 준용 / 위촉위원 임기에 따라 2년마다 발생 가정(전원지급 전제)